

보도 자료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순옥	국회의원	 T.02)788-2758(내선 2758) F.02)788-0343 blog.naver.com/sparksoon twitter.com/chunsoonok 의원회관 633호
		배포일 '12. 10. 10. (수) 담당자 조영학 보좌관 H.P. 010-9508-0810			

- 특허심판 소요기간 너무 길어 신속한 권리 구제 미흡
-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소요기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해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당 전순옥의원은 10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특허심판원의 특허심판 소요기간이 조세심판원(90일) 등 여타 기관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길어 신속한 특허 권리 구제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전순옥의원실이 특허청의 자료를 받아본 결과, 특허청은 현재 특허심판에 소요되는 기간을 8~9개월 정도라고 밝혔다.

전순옥의원은 이 날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주식회사 슈버와 삼성전기’의 특허분쟁 사례를 지적하며, “대기업의 횡포로 유망한 중소기업 하나가 힘없이 무너졌으며, 특허심판원의 늦장 심판으로 특허청도 대기업의 횡포에 일조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고 질타했다.

전순옥의원이 사례로 제시한 주식회사 슈버와 삼성전기의 특허분쟁은 지난 2005년에 발생한 것으로, 당시『핸드폰용 커버 개폐장치』의 특허를 개발한 중소기업 슈버(주)가 자신의 특허가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삼성전기가 ‘자신들은 슈버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 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던 사안으로, 특허심판원은 심판 신청 18개월만에 슈버(주)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였던 슈버(주)는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특허분쟁 도중 도산하였다.

전순옥의원은 “특허심판에 소요기간을 8~9개월 정도라고 했는데, 이 기간도 너무 길다. 내부규정을 만들거나 고쳐서라도 처리기간 단축을 명시적으로 해두어야 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고 지적하며, “업무의 특성은 다르지만,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처리기간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90일’ 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